

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

제정	1996. 12. 19	조례 제 76호
개정	1998. 10. 8	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1998. 2. 5	조례 제 16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0. 12. 29	조례 제 303호
	2001. 3. 16	조례 제 323호
	2003. 3. 21	조례 제 432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77호
일부 개정	2011. 12. 15	조례 제 1200호
일부 개정	2013. 3. 6	조례 제 127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 개정	2013. 11. 1	조례 제 132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 개정	2014. 10. 6	조례 제 13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 개정	2015. 11. 6	조례 제 1514호
전부 개정	2018. 9. 28	조례 제 1854호(제명개정)
일부 개정	2019. 7. 1	조례 제 193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9. 7. 1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
 - 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
 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
 -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

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

유족 또는 가족

바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
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

2. “공공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과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
(이하 “소속행정기관”이라 한다)의 청사

나. 가목 외의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

다.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유관단체에 위탁한 시설

라.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

마. 시의 출자·출연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4조(사전 공고 등) 용인시장, 소속행정기관의 장,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유관단체의 장, 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시 홈페이지(시정개시판 또는 용인시보 등을 말한다)에 공고하고, 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(신청)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>

1.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1부

2.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6조(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)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.

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운영·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제7조(계약자 등의 의무)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료 등)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은 「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를 따르되, 전기 등의 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8. 9. 28 조례 제1854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부칙 <2019. 7. 1 조례 제193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공고된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] <개정 2019. 7. 1>

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

(제6조 제2항 관련)

1.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만70세 이상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만65세 이상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	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
3	미과세 대상 장애인	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		

※ “미과세대상자”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.

2. 제1호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또는 제1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.
- 부양가족(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,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 수가 많은 사람
 - 용인시 거주기간(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최근 용인시 전입신고일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한다.)이 오래된 사람 단, 단체간 경쟁 시 단체등록일이 오래된 단체, 개인과 단체 경쟁 시 개인은 용인시 거주기간, 단체는 운영기간으로 함.
 - 추첨

[별지 서식]

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					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				
	신청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65세 이상 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,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			
		시설명		영업의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판매기
		설치장소			
		설치대수	매점	개소(m ²)	
자동판매기			대(음료수, 커피, 기타)		
「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(매점, 자동판매기)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					
귀하					
구비서류	「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				